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245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이정문 · 조계원 · 문진석
박상혁 · 김준혁 · 임미애
이성윤 · 윤준병 · 전용기
곽상언 · 조승래 · 김 윤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통보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누락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규범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대상자에 대해서는”을 “대상자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날(제1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⑥ (생략)</p> <p>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u>대상자</u>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 <p>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u>대상자</u> <u>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날(제1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u>----- -----.</p> |